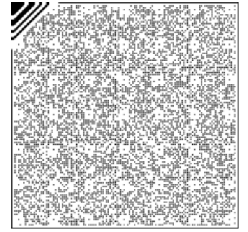




환 경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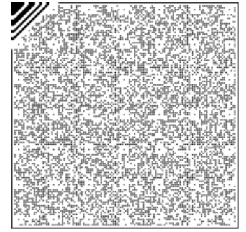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 및 가이드라인 안내

1. 환경보전을 위한 귀 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이 2024. 4. 30.부터 시행(2년간 계도기간 운영)됩니다.
3. 환경부에서는 행정효율성 제고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적용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제도가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을 안내[붙임]하오니, 협회·조합에서는 각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불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업계·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현장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원구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백화점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무관 **이병훈** 환경사무관 **임양석** 과장 **김호은** 전결 2024. 4. 29.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정책과-2077** (2024. 4. 29.) 접수

우 1507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자연순환국 자원순환 정책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46 팩스번호 044-201-7351 / gangjjang88@me.go.kr / 대한민국 공개